

의안번호	제2917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5. 2. 28.

#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제2917호
----------	--------

제출연월일: 2025. 2. 28.

제출자: 고성군수

## 1. 제안사유

- 하촌항 지구는 2017. 8월 지방어항 신규지정 후 어항현황 및 수산업 이용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어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양장 신설과 준설토의 물양장 배면 매립을 통한 안전한 어선 계류시설 확충을 통한 어항기능을 향상시키고, 또한 기존 선착장 끝단에 방파제를 신설하여 항내 정온수역 확보와 월파 피해방지를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함

## 2. 공유수면매립 개요

- 건 명: 지방어항(하촌항) 개발계획 수립
- 위 치: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일원
- 매립면적: 2,339m<sup>2</sup>(어항시설용지 조성)
  - \* 기본시설 958m<sup>2</sup>, 기능시설 1,188m<sup>2</sup>, 어항편익시설 193m<sup>2</sup>
- 시 행 자: 경상남도지사

## 3. 추진경과

- 2019. 7. : 어항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경남도)
- 2023. 9. : 하촌항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처분 완료
- 2023. 9.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
- 2024. 1. : 하촌항 지구 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 실사
- 2025. 2.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매립타당성 결과 회신

## 4. 근거법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붙임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반영 타당성 평가결과(해양수산부) 1부. 끝.